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융자 안내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지원

- (융자규모) 250억원
- (지원내용)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지원대상

- ① (주거래처 생산지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
- ② (중국 수출입피해) 對중국 수출·수입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 19 관련 수출·수입 피해 중소기업
- ③ (피해업종 영위기업)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 * (관광)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공연) 공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공연장
 - (전시)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시설사업자, 전시주최업자,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전시서비스사업자
 - (운송) 물류산업(융자공고 상 별표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 ④ (마스크 제조기업)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 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 마스크 제조기업은 경영애로 요건(매출액 10% 감소) 예외 적용

■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 (비교시점)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중국 내 최초 확진확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

-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2.15%, 변동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접수기간) '20.2.13(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 (예약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클릭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 '코로나 피해기업' 예약창구 선택 ⇨ 신청사유 선택

○ (지원절차)



- (용자방식)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 선정 후 직접대출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지부

참 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광·공연·전시·운송 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영위업종

* 용자제외 대상인 관광유희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희업,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제외

구 분	대상업종	산업분류(KSIC)	
여행업	일반여행업	75210	여행사업
	국외여행업	75210	여행사업
	국내여행업	75210	여행사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55101	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55101	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55101	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55101	호텔업
	가족호텔업	55104	민박업
	호스텔업	55104	민박업
	소형호텔업	55104	민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전문휴양업	55103	휴양 콘도 운영업
	종합휴양업	55103	휴양 콘도 운영업
	야영장업	55104	민박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유람선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관광공연장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국제 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국제회의기획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유원 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일반유원시설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타유원시설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관광편의 시설업	관광식당업	5611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관광사진업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52912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관광펜션업	55104	민박업
	관광궤도업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한옥체험업	55104	민박업
	관광면세업	47130	면세점업
	관광지원서비스업	관광지원서비스업	75290
75210			관광여행알선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영위업종

구 분	대상업종	산업분류(KSIC)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유스호스텔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55109	기타 일반 및 숙박시설운영업

○ 공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공연장 영위업종

구 분	대상업종	산업분류(KSIC)	
공연장	공연장*	90110	공연시설운영업
		90123	기타 공연단체

*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 단, 지원 대상은 동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하며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인 건설업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구 분	대상업종	업종 정의
전시	전시시설사업자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단, 전시시설 1개의 규모가 2,000㎡ 이상의 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
	전시주최업자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전시서비스사업자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별표 9 물류산업 영위업종

산업분류(KSIC)		산업분류(KSIC)	
49101	철도 여객운송업	52101	일반 창고업
49102	철도 화물운송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52103	농산물 창고업
4930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49302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49303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52991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0209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1100	항공 여객운송업	52993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1200	항공 화물운송업	76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위업종

구 분	대상업종	산업분류(KSIC)	
전세버스 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선박연료공급, 선용품공급 등 운송관련 지원 서비스업 영위 기업